

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
(參 照)

釜山直轄市沙下區土地評價委員會設置運營條例
中改正條例案

(끝에 실음)

○委員長 崔震斗 金孝東 地籍課長 수고하셨습니다.

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

○專門委員 趙元濟 都市委員會 所管 專門委員 趙元濟입니다.

釜山直轄市沙下區土地評價委員會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

1. 개정조례(안) 현황

○본 조례 근거법령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

○본 조례는 ('89. 10. 27) 제145호로 제정되어 2차에 개정(1차: '90. 3. 15 제165호, 2차: '93. 4. 16 제263호)

2.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

○'93. 7. 16 기구개편에 따라 통폐합된 직의 위원을 삭제하고 토지평가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 개정

—제3조 제1항 1호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, 토지관리과장을 도시개발과장 각각 임명

—제7조 제2항 중 지가조사계장을 지정계장, 토지관리과를 지적과로 변경

檢討意見은 同 條例 第3條 및 第7條 第2項

규정의 당연직 위원, 간사변경, 임명과 課 部署 명칭 변경의 條例改正은 業務의 性질상 관련성이 있어 條例 內容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地價公示및土地等の評價에 관한 법률 第12條 및 同法 施行令 第14條 규정에 중앙의 土地評價委員會 委員 15名 中 委員長을 포함 公務員 당연직은 6名이고 위촉 위원은 9名인 합리적인 구성에 비하여 地方土地評價委員會인 우리 區 委員會의 委員數는 현재 13名 中 90年3月15日 同 條例 1次 改正時에 沙下區 機構 확대에 따라 都市局長, 土地管理課長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, 委員 2名이 증가한 8名과 위촉 위원 5名으로 당연직 위원이 위촉 위원수보다 우위로 구성되어 있어 本 委員會의 案件處理過程에서 신속성 있는 운영으로 능률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地域事情 파악과 住民의 의견수렴 반영도가 낮아질 우려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

이러한 예상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地方行政에 적극적인 주민참여 확대와 地價公示 및 土地 等の 評價業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本 委員會 構成 運營 법률 취지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再調整하여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을 선정, 위촉위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아울러 地方化 時代의 地方自治制 實施에 기여할 수 있도록 區議會 議員도 委員으로 위촉하는 등의 檢討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崔震斗 專門委員 수고 했습니다.

다음은 質疑順序입니다.

質疑 및 答辯은 1問1答式으로 하겠습니다.

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 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孫判岩委員 委員長!

○委員長 崔震斗 孫判岩 委員 質疑해 주시기